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가합663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안진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유림, 이정민, 조효민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31.

주 문

1. 피고의 2023. 3. 31.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보수한도승인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낙농제품 제조, 판매업, 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및 주식보유 현황 등

2023. 3. 31.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720,000주, 자기주식총수는 40,288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은 총 679,712주이고, 피고의 등기이사인 C은 372,107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2023. 3. 31. 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1)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고(피고 정관 제35조 제1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피고 정관 제22조, 이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23.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6호 안건으로 이사의 2023년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이사보수한도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상정되었다. 위 안건은 출석주식 수 528,189주 중 436,746주의 찬성(반대주식수 : 90,807주)으로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23. 5. 30. 이 사건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각주1>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인 자로서 이사보수한도승인 결의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C이 보유한 주식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와 '찬성주식수'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는 찬성주식수가 64,639주(= 436,746주 - 372,107주)에 불과하여 반대주식수인 90,807주보다 적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의 과반인 78,041주[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156,082주(= 528,189주 - 372,107주)/2]에도 미달하여 부결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방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C을 비롯한 피고의 이사들은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에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2017. 12. 22. 개최된 이사회 결의(이하 ‘2017. 12. 22. 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에서 임원 보수를 확정하였고, C 등은 위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을 뿐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의 이사들은 2017. 12. 22. 자 이사회 결의 및 피고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보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할 실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는 경우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영에서의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재량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규정인바, 위 조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이사인 C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 결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보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371조 제2항<각주2>).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C의 의결권 행사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와 ‘찬성주식수’에서 제

외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는 156,082주(= 528,189주 - 372,107주)이고 이 사건 결의의 찬성주식수는 64,639주(= 436,746주 - 372,107주)이므로, 찬성주식수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인 78,041주에 미달하게 됨에도, 이 사건 결의는 C이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가결처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의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의 보수가 아닌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피고의 이사들의 개별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바, 특정 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관한 안전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각주3>

1) 관련 법리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

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피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4. 3. 29.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승인 결의도 이 사건 결의와 동일하게 50억 원으로 정하여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효력이 없거나, 위 결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결의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이사에 대한 보수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미치는 손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의 안전과도 무관하다.

② 원고가 주주의 공익권으로서 인정되는 제소권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려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고, 앞서 본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피고의 이사들은 이 사건 결의가 아니라 2017. 12. 22. 자 이사회 결의 및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보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2. 22. 자 이사회 결의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위 이사회 결의의 안건은 명백하게 2018년도 임원 보수 확정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C 등이 2023년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내부 규정인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규정에서는 이사의 월보수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위 월보수액은 피고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닌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승인된 금액을 의미하고, 오히려 피고의 임원규정 제4.8.1조에서는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 및 피고의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권가희 오하나

각주1: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각주2: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항 및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3: 피고는 변론종결 전과 그 이후에 재량기각에 관하여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변론종결 전에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